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2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 : 신장식 · 김재원 · 차규근

김준형 • 김선민 • 정춘생

서왕진 • 이해민 • 이성윤

백선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하도록 하고있음.

이에 대해 구성요건이 모호하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음. 헌법재판소도 해당 조항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긴 하였으나, 재판관1인은 이 조항의 모호성과 광범성이 형사소추권자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게 되고 직무를 맡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의결정을 주저하게 하는 한편 정책적 재량에 대하여까지 부당하게 형사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권한행사를 침해하는 폐단을 초래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2004헌바46 결정).

이에 직권남용죄에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

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을 추가함으로써 해석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올바른 행동을 독려하려는 것임 (안 제123조).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3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중 "職權을"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목적으로 직권을"로 한다.

제123조(직권남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23條(職權濫用) 公務員이 職權	제123조(직권남용)자기
을 濫用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얻게
義務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	하거나 타인에게 불이익을 주
람의 權利行使를 妨害한 때에	려는 목적으로 직권을
는 5年 以下의 懲役, 10年 이하	
의 資格停止 또는 1千萬원 이	
하의 罰金에 處한다.	